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1100056**
신청인: 구치오 구치 쏘시에떼퍼아찌오니
피신청인 : **김명진(Myongjin Kim)**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구치오 구치 쏘시에떼퍼아찌오니, 이탈리아 피렌체 50123
비아토르나부오니 73/알

피신청인: 김명진,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항오동 226-10

분쟁 도메인이름들은 “guccikorea.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온라인닉 아이엔씨(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파크웨이 236
마린 빌리지 909)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1.8.26.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서울사무소 (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1.8.30.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1.8.30.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1.8.30.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 (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1.9.1.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2011.9.1.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1.9.21. 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1.9.21.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미제출통지를 2011.9.28. 피신청인에게 하였다.

2011.9.29. 센터는 서정일 조정위원회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1.9.29.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2011.10.6.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한국을 포함하여 “GUCCI”, “구찌” 및 이를 포함하는 다양한 상표와 서비스표를 신청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갑제2호증, 국내상표등록목록 참조), 신청인의 인용상표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패션 및 가죽제품 브랜드로 오랜 기간 저명한 영업표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양질의 식별력 및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 명의로 2004.7.16. 등록되었으며(갑제1호증 참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그 도메인이름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질적인 영업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최근 웹사이트 상에

“guccikorea.com for sale 판매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피신청인의 이메일주소가 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GUCCI”은 신청인의 주요 표장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된 서비스표 “GUCCI”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신청인의 주지저명한 표장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신청인의 인용상표는 신청인의 1921년 Guccio Gucci에 의해 설립된 이래 각종 의류, 액세서리, 가방, 화장용구, 시계 등의 대표적인 브랜드에 저명한 영업표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신청인의 저명한 표장을 악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개연성을 찾기 어렵고, 피신청인 명의의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래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어떠한 형태의 사업도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진자라 볼 수 없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A)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도메인 이름의 유사

(1) 분쟁도메인 이름 <guccikorea.com>에서 “.com”은 도메인 이름의 구성상 기술적 표기부분으로 도메인 이름과의 비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guccikorea”는 “gucci”와 “korea”가 결합한 것으로 “korea”는 상호간의 유사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바 주된 요부인 “gucci”라는 저명표장에 부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의 명의로 등록된 주지저명한 신청인의 등록 서비스표인 “gucci”와 이 사건 분쟁도메인 이름과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도메인 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한 바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도메인 이름의 등록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또한 피신청인이 “guccikorea.com for sale 판매합니다” 라고 웹사이트 상에 게재하고 있는 사실에서,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최소한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이 가지는 신청인의 서비스표와의 유사성을 이용함으로써 인터넷상의 일반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 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 <guccikorea.com>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서정일

서정일
1인 조정부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